

5 가지 사항 뉴욕 시 인권법에 따른 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알아야 할

인종이나 종교를 이유로 이웃에서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까?
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습니까?
가족에게 외국어로 말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습니까?

차별적 괴롭힘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위협, 협박, 괴롭힘, 강압 또는 폭력을 말합니다.

- 개인의 시민권 또는 헌법상의 권리 침해하는 괴롭힘 및
- 실제 또는 심리적으로 인식된 대상인의 인종, 신념, 피부색, 출신 국가, 성별, 성 정체성, 성적 지향, 연령, 장애, 또는 외국인 또는 시민 신분 또는 기타 보호 신분 등이 부분적인 동기가 되는 괴롭힘.

- 1 차별적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간단합니다.** 인권 위원회에 차별적 행위를 신고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위원회에 전화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는 것입니다. 그 다음은 당국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
- 2 모든 사람들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, 뉴욕 시의 모든 사람들도 차별적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**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웃, 길거리에서 공격하는 사람, 또는 버스 동승자도 이러한 종류의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 또한, 공격자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, 피해자의 보호 신분 범주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자극을 받은 경우에도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합니다.
- 3 익명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차별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.** 인권 위원회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4 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, 인권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학대나 괴롭힘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도록 차별적 괴롭힘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.**
- 5 인권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차별로 발생한 지출 비용을 지급하고, 또한 정서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.** 또한 인권 위원회는 가해자가 민사상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.

뉴욕 시에서는 차별적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.

인종, 피부색, 종교/신념, 출신 국가, 성별, 성 정체성, 장애, 성적 지향 또는 체류 신분 또는 기타 신분 등과 같은 보호 신분을 이유로 타인이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폭력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경우, 311번으로 전화하셔서 인권 위원회에 도움을 (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) 요청하십시오. 이러한 행위는 뉴욕 시 인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